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수신자 배재홍, 이상훈(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귀하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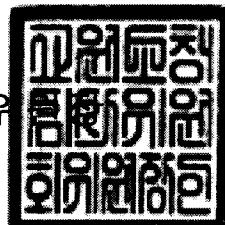
제목 소청심사 청구 결정 통지(2014-146, 14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1. 귀하가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4. 4. 30. 불임의 결정서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결정서를 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결정서 1부. 끝.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주사보 이은지 심사과장 이상돈 일반직고위공무원 류정섭 교원소청심사 2014. 5. 15.  
위원회 위원장 성삼제

협조자

시행 심사과-3877 (2014. 5. 15.)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 <http://www.act.go.kr>

전화번호 044-203-6480 팩스번호 044-203-6706 / lej026@moe.go.kr / 비공개(5,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 결정서

사건 : 2014-146, 14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1. 성명 배재홍

소속 수원대학교 직위 교수

2. 성명 이상훈

소속 수원대학교 직위 교수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손난주

피청구인 : 학교법인 고운학원

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심사방법 : 출석심사

심사일 : 2014. 4. 30.

##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 9. 청구인들에게 한 파면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9. 청구인들에게 한 파면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 이유

### 1. 사건 경과

가. 청구인 배재홍은 1991. 9. 1.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1996. 4. 1.,

2002. 4. 1. 각각 부교수와 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청구인 이상훈은 1990. 3. 1.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1995. 4. 1., 2003. 4. 1. 각각 부교수와 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013. 3. 설립되었으며, 청구인들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로서 활동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2. 5. 청구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3. 12. 24. 청구인 배재홈에 대해 논문 표절 사유를 추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2. 6.부터 2013. 12. 30.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들에 대해 파면 의결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1. 9. 청구인들에 대해 파면 처분을 하였다.

## 2. 처분 사유

### 【배재홈】

▣ 청구 외 이원영 교수와 함께 2009. 2.경부터 2012년까지 교지를 분양, 경작하게 하면서 임대 분양금을 받았고, 2013년도에도 회비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분양대금을 관리하다 되돌려 주었다.

▣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를 개설하고 수원대학교와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리는 등 교수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집단행동을 선동하였다.

▣ 2013. 3. 19. 총장의 면담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악의적으로 통화를 회피하는 등 총장 지시를 거부하였다.

▣ 2013. 4. 17. 교수협의회에 대한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2013. 5. 13. 교수협의회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 또는 추측내용을 주장하였다.

▣ 2013. 9. 24.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기초로 수원대학교를 종합감사 하라는 등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명확한 증거제시도 없이 학교를 폄하하고, 문제 있는 대학으로 신문과 인터넷상에 제보하여 학교에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혔다.

- ▣ 교무처장이 기자회견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을 통지했으나 불참을 통보하고, 부총장의 면담 요청도 두 차례 불응하였다.
- ▣ 2013. 10. 7. 무단 결강 후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 ▣ 2013. 10. 27. MBC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하였다.
- ▣ 2013. 12. 2.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이사장과 총장을 무고하였다.
- ▣ 2005년에 논문표절을 하였다.

### 【이상훈】

- ▣ 배재홍 징계사유 □와 동일하다.
-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에서 교수협의회 활동에 동조하지 않는 직원들의 명예훼손을 하고, 직원노조를 설립하자며 선동행위를 하고, 학교 행정직원을 비하했으며, 사실과 다른 글을 게시하는 등 대학 질서를 어지럽히고 학사행정을 방해하였다.
- , ▣ 배재홍 징계사유 □, ▣와 동일하다.
- ▣ 2013. 6. 7. 국회 세미나에서 수원대학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표하였다.
- ▣~▣ 배재홍 징계사유와 동일하다.

### 3. 청구인들 주장

가. 절차상 하자

- 1) 징계 의결 요구 시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 2) 청구인들은 기피여부 판단을 위해 징계위원 명단 교부를 요청했으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 3) 「교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에 의해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때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감사와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나. 교수협의회 카페 운영(배재흠 대, 이상훈 대, 대)

카페 운영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카페는 건전하게 운영하였다.

다. 면담요청 불응(배재흠 대, 대, 이상훈 대, 대)

총장이 개별 면담을 요청하여, 공동대표 3인은 공동 면담 의사를 표시했으나 오히려 총장이 거부하였다. 교무처장 면담 관련하여서도 청구인들은 총장 결재를 받아 다시 요청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으며, 부총장과의 면담은 몇 차례 있었다.

라. 허위 기자회견(배재흠 대 내지 대, 대, 대, 이상훈 대 내지 대, 대)

청구인들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며, 모두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다.

마. 무단결강(배재흠 대, 이상훈 대)

청구인 배재흠은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휴강을 통지하고 2013. 12. 9. 보강도 마쳤다. 청구인 이상훈의 수업은 박사과정 수업으로 학기당 3~4회 정도 강의를 하고 과제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바. 생태농장(배재흠 대)

2012년경 청구 외 이원영 교수는 일반인에게 텃밭을 경작하게 하고 경비를 받아 징계처분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당시 청구인 배재흠에 대해 징계 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사. 연구부정(배재흠 대)

이 사안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4. 판 단

### 가. 절차의 적법 여부

#### 1) 징계의결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은 「사립학교법」 제64조에 의한 충분한 조사가 없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보면,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처·실장 및 부처장 회의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징계요청을 한 내용과 직원대표 명의로 접수된 징계청원서 내용을 확인하였고, 2013. 12. 4. 교원인사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기피신청권 침해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개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법규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피징계자로 하여금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2. 12. 3. 선고 91나54451판결 참조).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사전에 청구인들에게 징계위원의 명단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교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sup>1)</sup> 위반에 대해

가) 피청구인은 자체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관련 사건이 수사 등이 진행중 이었음에도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여부 등과는 별도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교원인사규정」은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단속 규정이라고 보이고, 달리 효력규정이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피청구

1)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이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인이 단속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4) 징계의결 요구 전 이사회 의결에 대해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전에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학교법인 일선학원 정관 제39조에 의하면 교원의 임면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징계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 의결이 요구되는 시기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이라 할 것이며(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누10986 선고, 대법원 확정),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교원의 임면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 44299 판결).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파면 처분은 교원의 임면에 해당하므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의 하자라 할 것이다.

#### 5) 징계의결서의 구체성에 대해

가) 청구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서 중 ‘다음 카페 개설 및 비방글을 게시(배제흠 囹, 이상훈 囤, 囌)’를 살펴보면 “은유적인 글을 올리고 댓글을 유도함으로서 악의적인 글이 올라오는 것을 권장 또는 방조하였다.”, “수원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대내외적인 명예 실추·훼손은 물론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카페를 통하여 집단행위를 선동 조장하였다.” 라고 적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의 적시가 없다.

나) 「사립학교법」 제66조에서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기재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사유 설명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절차를 흡결한 하자(서울고법 1989. 10. 13. 선고 89나239 판결, 확정)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징계의결서의 적시는 청구인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의 하자라 할 것이다.

#### 나.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다음 카페 개설 및 비방글을 게시(배재홍 朴宰暉, 이상훈 李相勋, 이재호 李在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처분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근거 없는 비방성 공동성명 발표 등(배재홍 朴宰暉, 이재호 朴在浩, 이상훈 李相勋, 이재우 朴在佑, 이재현 朴在顯)

가) 청구인들은 2013. 4. 17., 2013. 5. 13., 2013. 9. 24. 수원대학교 운영 등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였고, 인터넷과 언론 등에 제보하거나 인터뷰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위 내용들은 2012년 3월 교육부 감사와 2013. 4월, 2013. 8월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인들로서는 제기한 의혹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며 기자회견의 목적도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무단결강(배재홍 朴宰暉, 이상훈 李相勋)

가) 청구인들이 2013. 10. 7. 휴강을 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 별도의 결강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행위는 「수원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11조(결강 및 결근)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4) 면담 요청 불응(배재홍 朴宰暉, 이재호 朴在浩, 이상훈 李相勋)

가) 총장, 부총장 및 교무처장이 청구인들에게 면담을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의 개별 면담 요구에 직접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요구사항을

적시한 공문을 통하여 답변을 하였고, 피청구인 측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 부분 청구인들의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5) 생태농장 관련 업무 방해(배재흠 편)

가) 청구 외 이원영 교수가 수원대학교 후문 근처의 교지에 텃밭을 조성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약10명의 교수들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관리하였던 사실, 이원영 교수는 2012. 8. 20. 감봉1월 처분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교지를 개간하여 교수들에게 회비를 받아 별도 보관한 것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6) 논문 중복 게재(배재흠 편)

가)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게재된 청구인의 논문이 80%이상 동일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 의결요구를 한 시점인 2013. 12. 24.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과면처분을 하는 것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 할 것이다.

##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모두 중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30.

교 원 소 청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성 삼 제 성삼제

상임위원 류정섭 류정섭

위 원 고영현 고영현

위 원 양일선 양일선

위 원 김동준 김동준

위 원 김경배 김경배

위 원 문영기 문영기

위 원 박범덕 박범덕

위 정본임.

2014. 5.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